


‘경쟁질서 확립, 믿음직한 공정위, 행복한 소비자’

 공정거래위원회 www.ftc.go.kr	보도자료 <주4보도자료>	담당부서	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
		담당자	팀장 최무진, 사무관 심주은
		연락처	02) 2110-4838

내년도 신학기 학생복부터 제조년월 표시 의무화
공정위, 중요정보고시 개정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권오승)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‘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’(일명 중요정보고시)를 개정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

- * 중요정보고시는 표시·광고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·광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보와 해당 정보에 대한 표시·광고의 방법을 정해주는 제도임
- * 고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에 관한 정보나 상품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등임

<금번 고시 개정 주요 내용>

-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을,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했다는 내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,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매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
- 특히, 통신판매시 ‘안전인증 필’등의 내용을 해당매체에 표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그 동안 통신판매를 통하여 많이 유통되어 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제품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안전인증 등을 필했다는 내용을 제품자체에 표기하는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旣의무화되어 있음(전기용품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어린이용품 :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)

-전기용품 : 전기다리미 등 전기기기, 모니터 등 정보사무기기 등 247개 품목

-어린이용품 : 비비탄총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킥보드 등 15개 품목

○ 학생복의 경우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'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 년도'를 제품 자체에 표시토록 의무화

○ 귀금속·보석 업종의 경우 함량 미달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'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'를 보증서 등에 표시토록 의무화

○ 여행업종의 경우 여행상품가격이 실제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가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'추가경비' 내용을 '필수적인 추가경비'와 '선택경비'로 구분하여 '필수적인 추가경비'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택경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광고하도록 함

*필수적인 추가경비 :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(공항이용료, 전쟁보험료, 관광진흥기금, 유류할증료 등)

*선택경비 : 여행자가 자신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(선택관광 경비, 안내원 봉사료등)

- 또한, 사업자가 중요정보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식할 수 없게 기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대상 중요정보항목을 '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글자의 색·크기·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구별되게 기재'하도록 광고방법을 명시

○ 렌탈서비스업종의 경우 정수기, 공기청정기, 도서 등 대여되는 상품의 고장, 훼손, 분실시 소비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데, 그러한 정보는 분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표시장소로서 제품라벨 이외에 '포장지', '사업장게시물'을 추가

- 전화정보서비스업종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광고에 기재해야 하는데, '정보제공자의 주소'의 경우 기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'홈페이지 주소'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
- 체형피부관리·렌탈서비스·산후조리원 업종의 경우 현행 고시는 표시사항으로서 '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'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은 중도해약시 사업자가 단독으로 환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'중도해약시 환불기준'으로 변경('환불여부'삭제)
 - * 체형피부관리렌탈서비스산후조리원 업종의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, 사업자는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경부 고시)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해당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함

□ 금번 고시 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

- 금번에 개정된 고시는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,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
- 아울러, 금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, 그동안 학생복, 귀금속·보석, 여행 시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도 많이 억제될 것으로 보며, 규제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렌탈서비스 업종 등에는 고시준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□ 향후 계획

- 공정위는 금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2월 1일까지 관련 사업자,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·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

- 특히, 금번 고시 개정시 신설된 소비자안전분야와 중요정보항목이 추가된 귀금속·보석업종, 학생복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
- 방문교육이 곤란한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E-mailing 서비스를 통한 홍보등을 실시할 계획임
- 또한, 사업자들이 개정된 고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5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소비자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

※ 첨부 : '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' 개정 경위 및 주요내용

<첨 부>

‘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’ 개정경위 및 주요내용

1. 고시 개정 경위

- 중요정보고시 이행 실태조사 (06.9)
- ‘소비자정보제공 활성화 워크숍’ 개최 (06.12.22)
 -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
 - * 산자부(기술표준원), 관련 소비자사업자단체(귀금속판매업중앙회, 귀금속가공 기술협회, 체형피부관리서비스중앙회, 한국일반여행업협회, 온라인쇼핑협회, 주부교실중앙회, 녹소연)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으며,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개정(안)에 반영
- 「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」 고시 개정(안) 검토(07.4.)
- 관계부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(07.4.19.~5.3.)
 - * 재경부장관 등 5개 관계 행정기관,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,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,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, 체형피부관리서비스중앙회, 한국일반여행업협회, 한국주택협회 등 8개 관련 사업자단체 및 (주)아이비클럽, SK네트웍스(주), 스킨룩스 등 4개 관련 사업자
-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개최 (07.5.15)
 - * 산자부, 건교부, 복지부 등 3개 관련부처 및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임원 및 학계·법조계 등 소비자정보제공 관련 전문가 참석
- 공정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(07.5.30. ~ 6.5.)
-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(07.6.7.~ 6.25.)
-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(07.7.11.)
- 관보게재(07.7.26.)

2. 개정 고시 주요내용

가. 신규분야 및 중요정보 항목 추가

개정사항	적용분야	개정내용	개정사유
소비자안전 분야 신설 (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)	표시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을,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했다는 내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,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해당 매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* 안전인증 등을 필했다는 내용을 제품자체에 표기하는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既의무화 되어 있음 (전기용품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어린이용품 :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) 	-소비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판매제품들의 안전성 확인
의류업종 (학생복)	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복에 한정하여 표시항목에 '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'를 추가 	-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피해 예방
귀금속 보석업종	표시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시항목에 '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'를 추가 ○ 표시장소로서 '제품'을 추가 (현행 : 제품의 '용기' 및 '첨부물') 	-귀금속 함량 미달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

나. 고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사항

개정사항	적용분야	개정내용	개정사유
여행업종	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경비 내용을 '필수적인 추가경비'(공항이용료, 전쟁보험료, 관광진흥기금, 유류할증료 등 여행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)와 '선택경비'로 구분하여 '필수적인 추가경비'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택경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광고하도록 함 	-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들을 '추가경비'로만 표시함으로써 여행상품가격이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사례 예방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적인 광고사항을 '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글자의 색·크기·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'하도록 광고방법을 새롭게 추가 	-사업자가 중요정보항목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식할 수 없게 기재하는 것 예방
렌탈 서비스업종	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요정보항목 표시장소에 '포장지'와 '사업장 게시물'을 추가 (현행 : 제품라벨) * 표시사항 : 소유권 이전조건, 상품의 고장분 실시 소비자의 책임범위,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	-현행고시는 표시장소를 제품 라벨로 한정하고 있어 고시를 준수하기 어려움
공동주택업종 건축물분양 업종	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 분양사업자를 '공동주택업종'의 적용대상 사업자로 일원화 * 광고사항 : 건축허가 취득여부, 대지소유권 확보여부, 분양대금 관리방법 	-현행 규정상 공동주택분양사업자는 '건축물분양업종'과 '공동주택업종'상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 혼란 초래
전화정보 서비스업종	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고 사항중 '사업자의 주소'를 '사업자 홈페이지 주소'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	-'주소'는 기재량이 많아, 협소한 광고지면에 표시하기 어려움
체형피부관리 렌탈서비스산 후조리원 업종	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시사항중 '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'을 '중도해약시 환불기준'으로 변경('환불가능 여부'를 삭제) 	-중도해약시 사업자들은 해당고객과 약정한 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기준(재경부 고시)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데, 현행 고시는 환불여부를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줌